

8. 협의이혼 재산분할 취득시

§ 15조①6세울특례

1. 혼인관계증명서 ↪ 반드시 이혼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처리
2. 재판상 이혼시(화해, 조정을 포함)는 법원판결문
3. 협의 이혼시는 재산분할협의서(약정서)-검인필요+ 인감증명서 첨부(선택사항).
4. 감면신청서 및 취득세신고서

취득시기 : 소유권이전 등기일 (→취득신고일)

시가인정액적용

* 세율특례로 3.5%중 취득세분 2%는 감면되고 등록분 1.5%만 과세됨.

재산분할로 인한 주택취득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제외함. (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2호)

상가나 85㎡이상의 주택은 감면세액의 20%를 감면분농특세로 과세한다.